



갈담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1999.	3.	31
제1차 개정	2002.	4.	1
제2차 개정	2005.	4.	1
제3차 개정	2011.	4.	29
제4차 개정	2017.	4.	13
제5차 개정	2021.	2.	16
제6차 개정	2022.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갈담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갈담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65(갈담리 323-1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학년제) **초·중등교육법 제26조(학년제)**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학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12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7. 학교의 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5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 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급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제9조 (학생정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①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운영·수업일수·체험학습·고사

제10조 (교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① 초등학교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이다.

제11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3조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2조 (수업운영방법등) 초·중등교육법 제24조 2항, 시행령 제48조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시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4조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② 재취학·편입학·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다.

제15조 (체험학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체험 학습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고,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횟수 상관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개인 교환학습을 4주 이내의 기간으로 사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교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고,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횟수 상관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단체 교환학습을 2주 이내의 기간으로 사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 교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외체험 학습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횟수 상관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30일 이내로 사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보호자가 ‘가정학습’ 운영 신청하는 경우 : 연 30일 이내 단, 1호와 2호를 합하여 30일 이내로 한다.
- 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⑥ 체험학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본교 체험학습 계획에 따른다.

제16조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2항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 (고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①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②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장 입학(조기입학) · (취학)유예 · (취학)면제·재취학·편입학·전입학

제18조 (입학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제19조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읍·면 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 자(입학할 학교 변경 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에 해당되는 자(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② 제1항 2호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②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②항에 해당되는 자(조기입학 자)

제19조 (취학 유예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재취학, 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21조 (전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①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전입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전출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전출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⑥ 학교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의한 학생이 전입학할 경우 2항에 준용하여 입학을 허락한다.

제22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

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⑤ 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월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 ⑦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23조 (출결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4.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5.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⑥ 출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출석인정 및 출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수료 및 졸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5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 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6조 (조기진급.조기졸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6조

-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조기 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 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7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8조 2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의 장 선정

제28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 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① 제28조 2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호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0조 (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 구체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31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8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7항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3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9장 수업료·입학금·기타비용징수

제34조 (수업료 등)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4항

- ①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② 기타의 비용(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계 활동비)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10장 학생포상·학생훈육 및 징계

제35조 (학생포상)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6조 (학생징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1항과 2항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장애학생대상 학생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 ①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된다.
-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38조 (장애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39조 (학생자치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자치활동 계획에 따른다.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0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 학교의 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제41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제42조 (학교 자치) 전라북도 학교 자치 조례

- ①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⑤ 학교 자치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각각의 규정에 따른다.
- ⑥ 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를 두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4조

- ① 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교의 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⑦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⑧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⑨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⑪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복지법 제22조

- ① 아동 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인정 결석 학생(연속 10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5조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 ①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독서교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7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보건법 제9조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자살예방 상담 · 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①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 ·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①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0조 (학생의 안전대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8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 · 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제13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51조 (학칙개정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 (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199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학칙 3차 개정안은 개정일(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칙 4차 개정안은 개정일(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학칙 5차 개정안은 개정일(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학칙 6차 개정안은 개정일(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